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4. 2. 13.>

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[] 통지서
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[] 감액[] 통지서

수급자	성명	
	주소	
지급 정지 지급 중단	해당 기간(지급주기)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회차 지급주기)	
	총 정지 또는 중단 횟수	
	사유	
지급 감액	해당 기간(지급주기)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(회차 지급주기)	
	감액기간 중 지급할 금액 원	
	사유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6항제1호·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, 지급 중단 또는 감액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

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

1.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팩스번호(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(80g/㎡)]